

예산총칙

202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23,374,551	21,701,237
일반회계		712,781,196	21,383,436
특별회계		10,593,355	317,801
	기타특별회계	10,593,355	317,8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5,305	459
	주차장 특별회계	9,404,940	282,14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02,366	18,071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483,464	14,504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77,504	2,325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9,776	29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80,011천원(일반 5,232,155천원, 재해·재난목적 1,847,856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1,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 등 이전재원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다.

※ 예산서 자원 표기

[국] 국고보조금, [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 기금보조금
[특] 특별교부세, [별] 특별조정교부금, [시] 시비보조금, [구] 자체재원